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17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채현일 · 이해식 · 모경중  
양부남 · 이광희 · 복기왕  
장철민 · 김현정 · 강준현  
김병주 · 정진욱 · 박지혜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주소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국가 핵심 데이터 행정 · 물류 · 부동산 · 안전 · 통계 · AI산업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국가통계승인 기준 '24년 6.7천억원의 규모가 확인되었으며, '30년에는 3.6조원으로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AI 등 신산업의 성장기반이자 안전(국정과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재난 관리체계확립’의 세부과제에 ‘주소정보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이 선정)과 관련한 핵심 산업임. 그런데, 현재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 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3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함. 또한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나. 주소정보기술 진흥(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소정보산업 기반 조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필요한 정보를 생성·관리하고, 주소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소정보산업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을 조사·연구·개발하고 그 표준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 등의 품질 확보와 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산업정보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소정보사업자와의 유사·중복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고, 주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바.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안 제23조 및 제24조)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진흥원과 주소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주소정보산업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소정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소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인적·물적 식별과 위치 파악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주소정보산업”이란 주소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과 관련된 산업
  - 나. 실내 위치의 안내와 관련된 산업
  -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과 관련된 산업

- 라. 그 밖에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3. “주소정보사업”이란 주소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소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안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에서 주소정보를 구축하는 사업
- 다. 주소정보의 수집·처리·가공·유통 서비스업
- 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활용업
- 마. 주소정보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의 개발·생산·관리 또는 서비스업
- 바. 그 밖에 주소정보를 활용한 사업
4. “주소정보체계”란 주소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주소정보기술”이란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로서 주소정보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6. “주소정보사업자”란 주소정보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주소정보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주소정보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주소정보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산업의 분야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산업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소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주소정보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주소정보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공부문의 수요를 조사(이하 “공공수요조사”라 한다)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제3장 주소정보기술 진흥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협약의 체결 방법과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사업자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소정보기술의 활용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주소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0조(주소정보산업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성·관리하고 주소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이하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주소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2. 주소정보산업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서비스 유형별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이하 “기본형주소산업정보”라 한다)
4. 주소정보와 다른 정보를 융복합한 학습·추론·판단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주소정보(이하 “지능형주소산업정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국외 활동 지원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에 필요한 국내외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주소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의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사업자 등과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업용주소정보 등의 제공 등) ① 주소정보사업자는 산업용주소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산업용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산업용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 사항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산업용주소정보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산업용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용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산업용주소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

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신고 등) ①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전문인력이 소속된 주소정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주소정보산업의 지원

제14조(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이하 “표준화”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의 표준화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이 국제표준기

구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기구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주소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⑦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품질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공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사업 수행환경
  2. 주소정보사업 수행도구
  3. 주소정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그 밖에 주소정보서비스의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품질인증

을 받은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소정보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 주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소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가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및 준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주소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주소정보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주소정보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3.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4.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주소정보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 관계기관 법인 사업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장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

제19조(주소정보사업의 등록) ① 주소정보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주소정보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주소정보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그 밖에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점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주소정보사업자의 업무 영역 보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소정보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사업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유사 중복 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사업자로 등록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실태를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 협력)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하여 주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하여 주소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인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협력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7장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

제23조(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에 관한 정관의 운영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소정보 관련 법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주소정보와 관련 있는 법인이나 임직원
4. 제24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협회 임직원

④ 진흥원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제5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조사
  3. 제10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산업용주소정보 등 주소정보의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제15조에 따른 주소정보 관련 품질인증의 지원
  7. 제18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8. 「도로명주소법」 제28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⑤ 진흥원의 장은 주소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주소정보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소정보해외진출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⑦ 국가기관 등은 진흥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⑨ 진흥원의 주소정보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⑩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⑪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주소정보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주소정보사업자와 전문인력은 주소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소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제안 및 개선 건의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법」 제26조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관련 시설물 조사
5. 주소정보산업의 출판·전시·홍보사업

6. 주소정보산업 종사자의 위상 제고 및 상호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산업 활성화 관련 시범사업
8.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주소정보산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그 밖에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장 보칙

제25조(자료제공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0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용주소정보의 전국적 통일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7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5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3. 제15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사업자 등록 취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종사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
4. 제15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종사자
5. 제23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임직원
6. 제24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협회의 임직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임직원

## 제10장 별칙

제30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산업용주소정보를 반출한 자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거짓으로 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주소정보사업을 영위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주소정보사업자
2. 제23조제11항을 위반하여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주소정보산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33조(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초과수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 사업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익을 얻은 자

2. 제17조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수익을 얻은 자의 수익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에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설립에 다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중소기업산업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